

계	약	번	ই	:	

제품공급계약서

<u>주식회사 원익 아이피에스</u> <u>프렉스에어코리아 주식회사</u>



제품공급계약서

계	약	번	ठ	:	
ح الح	ارد ا	4,20	וא וו		

계약체결년월일 : _____

구 매 인 :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-1번지

주식회사 원익 아이피에스(이하 "갑"이라 함)

(이하 "갑" 이라함)

판 매 인 : <u>서울시 강남</u> 대치동 943-19

프렉스에어코리아㈜(이하 "을"이라 함)

(이하 "을" 이라함)

이 계약의 상호약속을 약인으로 하여 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.

- 아 래 -

제 1 조 【용어의 뜻】

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: "제품" "갑의장소" "기본기간" "순도규격"은 갑과 을이 서명한 별첨 부록에 기재하는 뜻을 지닌다.

제 2 조 【필요물품 】

- 1) 을은 이하에 기재한 조건으로 갑의 장소에 또는 갑의 장소가 이전되면 이전된 장소에, 액체의 형태로 현재 또 는 장차 갑이 수요로 하는 제품 전량을 판매하고 갑은 이 를 전량 매입하기로 확약한다.
- 2) 필요 제품의 공급은 을이 액체 또는 기체의 형태로 별 첨 부록에 규정한 가격으로 갑에 설치된 저장설비에 제품 을 인도함으로써 완료된다.

제 3 조 【가 격】

- 1) 을은 이 계약에 따라 매월 별첨 부록에 명시한 가격 (제7조에 의하여 조정됨)으로 갑에게 인도한 제품의 대금을 청구하며, 갑은 이를 을에게 지불한다.
- 2) 갑은 월 마감 15일 이내 현금(매입액 1000만원 미만)

또는 월 마감 60일 만기되는 어음(매입액1000만원 이상) 으로 지불한다

제 4 조 【제품인도 】

- 1) 같은 필요한 가스량을 사용시간 기준 최소 24시간 전에 을에게 서면 또는 구두 통지하여야 하며 을은 주문을 받은 후 갑의 지정시간 또는 협의된 시간 이내에 그 제품을 인도하여야 한다.
- 2) 을의 제품인도로 갑의 제품 구매가 성립되며 인도 제품의 수량은 차량 유량계 또는 공인계근소를 이용하여 측정한다.

제 5 조 【저장설비 및 저장소】

1) 갑은 갑의 비용으로 저장설비 설치를 위해 상호 합의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적절한 장소를 제공하고, 각 저장설비를 위한 적절한 기반을 건설하고, 보안용 철망담장 또는 각 저장소를 적절히 보호하는 그 밖의 울타리를 만들어 유지하고, 저장소로부터 갑의 사용 지점까지의 제품 분배체제를 마련, 유지하고 저장소에 필요한 전력 및 유



틸리티의 공급시설을 제공한다. 상호 업무 Scope에 대해 서는 첨부 투자비 내역의 업무 Scope에 준한다

- 2) 을은 각 저장설비를 설치하고 제품 분배를 위한 갑의 장치에 연결시킨다. 각 저장설비는 언제나 을의 재산이 며, 을은 그 소유권 표시를 저장설비에 부착할 수 있음 을 합의한다.
- 3)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존 저장설비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, 또는 저장설비가 파손된 경우 갑은 탱크 이전에 필요한 계반비용 또는 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. 계약해지에 의한 설비 이전 또한 본 조항에 적용되며,본 계약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4) 갑은 이 계약 이행을 위하여 을이 저장설비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며 을의 대표자나 을이 위임한 종업의 이외에는 저장소에의 출입, 그 변경, 보수, 조정을 되게 정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- 5) 갑은 저장설비가 소재한 토지 내지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기타 제3자의 권리행사(이하 "담보권 등")로 인해 을의 저장설비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갑의 비용으로 방지하여야 한다. 위 부동산대한 담보권 등의 실행에 따라 을의 저장설비에 대한 권리가 침해될 경우 갑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한다.
- 6) 을에 의해 갑에게 제공된 저장설비에는 을에 의해 보 증된 을의 공급 제품만을 저장 하여야 하며, 타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.
- 7) 을은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한 저장설비의 하자 등에 관하여 갑의 통지가 있은 즉시 하자보수를 실 시하여야 한다. 만약 갑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을의해태 또는 태만 등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 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..
- 8) 을은 저장설비의 노후,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갑과 협의하여 정기적인 저장설비의 점 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누수 또는 이상징후의 발견 시 즉시 갑과 협의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.

제 6 조 【순도규격 】

1) 을은 이 계약에 따라 공급한 제품은 별첨부록에 명시한 순도규격에 부합되어야 한다. 같은 순도규격에 어긋난 제품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을은 거절된 제품에 대해서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.

- 2) 갑은 이 계약에 따라 공급된 제품이 규격에 맞는지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시험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. 또한 갑은 순도 유지를 위한 장비를 보유하지 않을 경우을의 시험기기를 사용하여 순도규격을 검사하는데 동의한다.
- 3) 갑이 제2항)에 따라 순도규격을 검사한 이후에는 공급된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을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.
- 4) 이 계약에 따라 공급된 제품에 대한 을의 과실 또는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은 해당 제품의 해당 월 판매가격 이내로 한다. 계약기간 중 발생한 손해배상액의 총 한도는 미화 7만 달러를 초과 할수 없다.

제 7 조 【가격조정 】

- 1) 을은 공급되는 제품의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비, 유류비, 도매물가 등의 변동요인 발생 시 갑의 사전 서 면동의를 얻어 이를 별첨 부록에 명기한 가격에 반영하 여 조정 할 수 있다.
- 2) 가격조정은 가격변동요인이 발생 시 갑과의 합의를 통하여 계약기간 종료이전이라도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 다.

제 8 조 【불가항력 】

을은 천재지변, 사고, 화재, 홍수, 폭풍우, 난동, 태업, 폭발, 파업, 노동분규, 전쟁, 국방, 법률, 전기사정, 에 너지 사정, 교통 등 불가항력의 사정으로 인한 이 계약의 불이행 또는 지체에 대한 이행 책임을 면한다.

제 9 조 【위험경고 책임】

갑은 제품사용에 위험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하며 관련 종업원에게 제품 사용과 관련한 위험을 인식시키며 제품에 관한 인체 및 재산에 대한 위험을 종업원 및 도급자들에게 경고할 책임을 진다. 또한 을은 제조, 의료 등분야에서의 임시 사용 또는 다른 물건과의 혼합 사용의적합성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.

제 10조 【양 도】

이 계약의 양도는 반드시 상대 당사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

제 11조 【통 지】

이 계약상 통지의 효력은 당해 통지가 도달한 날에 발생한다.

제 12조 【적용법률】

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른다.

제 13조 【신용손】

일방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지불불능, 정리, 청산 또는 그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함으로 인해 파산, 지불불능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각 사유로 인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또는 위 각 사유가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개연성으로 인해 갑의 신용상태가 중대하게 손상되었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서면에 의한 사전 최고후 서면에 의한 통지로써 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제 14조 【계약기간 】

1) 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발효하여 저장설비 또는 교체 설비의 첫 인도 후 기본기간이 생활할 때까지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계약 만료 3개월 전에 미리 서면 통지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은 1년 자동 연장한 것으로 한다.

2)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"갑"의 사유에 의하여 또는 제3자 거래에 의하여 거래 종료 될 경우 "갑"은 "을"에게 별첨 부록에 명시한 월 계약수량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의 60%를 "을"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3) "갑"의 사유에 의하여 계약해지 시 "갑"의 장소에 설치된 "을"의 공급설비의 철수비용은 "갑"이 부담하여야 한다.

제 15조 【이전 계약과의 관계】

이 계약은 갑, 을간의 이전의 모든 계약, 합의사항을 실 효시키거나 종전에 체결된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.

제 16조 【비밀보장 】

을은 제조 위탁에 의하여 알게 된 갑의 업무상 기밀 (도면, FILM, 자료, 금형 등 갑의 모든 KNOW-HOW)에 대하여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.

제 17조 【전체계약 】

이 계약과 부록에서 목적사항에 대한 전체 합의사항을 포함하며, 양 당사자는 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다른 약정, 보증사항이 없으며, 사전 약정 및 조정사항 에 따라 발주, 인수된 주문에 포함된 다른 조건은 무효 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.

제 18 조 【일반상관례 】

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 상호 협의 하에 일반 상관례에 준하여 처리한다.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갑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법원을 제 1심 합의관할로 한다.



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3년 1월 1일

(갑)

주식회사 원익 아이피에스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청호리 332-1번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43 19번지 대표이사 이 문

(을)

프렉스에어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 성



PRAXAIR

부 록

계약번호	계약년월일 액체질소	2013 년 1월 1일	<u>!</u> 의 계약에서 제품이란 를 뜻한다.
"갑의장소"	<u>"갑"의 평택공장</u>		-
"기본기간"	<u>2013 년 1 월</u> 2017 년 12 월	<u>1일 부터</u> 월 31일 까지	(5) 년간
다음 저장소에 다	한 공급 "가 격"		
		이 ᅰ 아 스리	- rl 7l
<u>제 품</u>		_ 월 계약 수링	
액체질소(LN2)	99.9995%	100톤 이상	210원/kg
		100톤 만만	220원/kg
상기 기본기간 이전	선에 신규 공장으로 이전	할 경우, 갑은 을에게	최우선 협상권을 제공한다.
		(
장 비	규 격	장비사용료/(월)_	
20톤 1기 저장탱크	, 기화기 외 부속설비	무상임대. 단, 납품개시	월부터 6개월 월 평균 100톤
		미만 시 단가 및 임대료	E에 관하여 재협의 할 수 있다.
(갑)		(슬)	
주식회사 원]익 아이피에스	프렉스에	어코리아 주식회 <mark>사</mark>
경기도 평택시 조]위면 청호리 332-1번	지 서울시 강남구	¹ 대치동 943-19번지
, , , , ,	이 문	대표이사	

업무 Scope ㈜원익IPS-평택 액체질소 저장설비 설치관련)

프렉스에어코리아㈜	㈜원익IPS			
저장탱크(LN2 20톤) 기존	Foundation modify/Fence			
기화기(1000Nm3/hr*2기)	Electrical facilities			
P.B Vaporizer	Permission			
PCV/PIC Control system	Safety equipment			
Filter/Housing				
Piping work				
Construction Cost Estimation 참조				